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45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김태호·조경태·엄태영

서천호 · 김종양 · 윤영석

임이자 · 김재섭 · 서범수

진종오 · 신성범 · 최형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을 대리하 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 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를 소재지로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하 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대리인 제도 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ㆍ 제4항).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설립하였거나 임원구성·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 사하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5조제3항제2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 중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 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②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후단 신설>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
	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설립하였거나 임원구
	<u>성·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u>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
	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2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u>아니</u>	<u>아니</u>
<u>한</u> 자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u>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u>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10. ~ 12. (생략)

⑤ (생략)

4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
지 아니한 자

10.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